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58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나5868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3491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변론 종결 2017. 1. 10.

판결 선고 2017. 2. 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4가단53491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231/1,815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현찬

판사이혜림

판사정의정

별지